

## 12-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5년 4~5월(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공시시기】 : 2025년 6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연구재단)

【공시내용】 : 2025년 학과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5년 이내 신규임용 전임교원) 2020. 4. 2. ~ 2025. 4. 1., (산학협력중점교수) 2025. 4. 1.)

(단위: 명)

기준 연도	단과대학	학과	5년 이내 신규임용 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경력없음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채용형 전임	지정형 전임	비전임
				1년 미만	1년 ~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합계									

### ■ 작성지침

○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은’ 최근 5년 이내 신규임용된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산학협력중점교수’는 2025. 4. 1. 기준으로 전체 현황을 작성

※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중 최근 5년 이내 신규 임용되었으나, 2025. 4. 1. 기준 퇴직 교원은 제외

※ ‘5년 이내 신규임용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제외

【학과】 : 산업체 경력이 있는 전임교원이 소속된 학과를 가리키며, 대학원 소속 교원의 경우에는 “OO대학원 OO학과”로 기입

※ 소속학과가 없는 교원은 ‘기타(소속학과없음)’으로 분류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 산업체 경력별로 전임교원 수를 구분하여 입력

【산업체 경력 범위】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함

#### 참고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규정 제4조제4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준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2. <삭제>

3.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4.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5~7. <삭제>

**참고**

8.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9.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건축사의 개업기간
10.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1급 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11.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1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13.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또는 수의과대학(수의학부 포함) 졸업자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동물병원 개업기간
14. 국가, 공공단체 또는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15.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16.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할 경력
17.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18.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함)

- ①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산업체 경력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의미함)
- ②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되거나 지정된 자
  -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무 ㉡ 임용 또는 지정 방식 ㉢ 산학협력 실적 중심의 교수업적 평가 및 재임용·승진 심사방법 등을 포함
  -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임용하거나 기존 전임교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기존 전임교원 중 지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체 경력 10년 미만이라도 지정 가능
- ③ 책임강의시수를 30% 이상 감면받은 자
  - 산학협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책임강의시수에서 30% 이상을 감면(비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수를 기준으로 판단)
  - ※ 인정기준 마련 이전('11.9.7)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하라고 하더라도 학칙, 정관 또는 채용공고문을 근거로 산학협력을 중점 추진하는 교원으로 임용되었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의 교수업적평가 및 재임용·승진 심사를 받는 자라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

**【산학협력중점교수-채용형 전임】** : 최초 임용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전임교원 형태의 산학협력중점교수 수를 입력

**【산학협력중점교수-지정형 전임】** : 최초 임용시에는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추후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된 전임교원 수를 입력

**【산학협력중점교수-비전임】** : 최초 임용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비전임교원 형태의 산학협력중점교수 수를 입력  
 ※ 비전임교원으로 임용 시에는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

**■ 참고사항**

-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